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관광진흥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최휘영 (문화체육관광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테마파크시설에서의 중대한 사고 발생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, 신속하고 적절한 사고 대처가 가능하게 하려는 내용으로 「관광진흥법」이 개정(법률 제 21087호, 2025. 11. 11. 공포, 2026. 05. 12. 시행)됨에 따라,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, 사고기록대장의 효율적인 작성 및 배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테마파크시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 필요시 법 제 33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는 바, 위원회의 위원수, 위원자격, 위원의 임기, 구성 및 운영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31조의3 신설)
- 나. 중대한 사고와 관련하여 법 제33조의3에 따라 사고기록대장을 작성·배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바, 안전정보 제공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를 위해 이미 구축되어 운영중인 ‘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’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재발방지 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함.(안 제31조의4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: 실시 예정

3) 행정규제: 협의 예정

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의3을 제31조의5로 하고,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1조의3(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33조의2 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(이하,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테마파크업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
2. 테마파크시설의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.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
 - 나. 대학에서 관광 및 재난·안전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
 - 다. 테마파크업 안전성 검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
라. 테마파크업 또는 테마파크시설의 제조·설치 또는 유지관리 관련업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
③ 위원(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)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며, 사고조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⑤ 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, 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31조의4(사고기록대장의 작성·배포 등) ① 법 제33조의3 제1항에 따른 사고기록대장 작성·배포와 제2항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법 제34조2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.

② 법 제33조의3 제2항에 따른 대책은 매년 법 제33조의3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사고기록대장을 기초로 하여 마련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사고유형별, 지역별 발생현황

2. 사고원인 및 피해현황

3.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

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법 제33조의3 제2항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1조의3(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33조의2 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(이하,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 <u>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</u> <u>1. 테마파크업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</u> <u>2. 테마파크시설의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u> <u>가.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</u> <u>나. 대학에서 관광 및 재난·안전관련 분야에서 부교수</u>

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
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
람

다. 테마파크업 안전성 검사
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
한 경력이 있는 사람

라. 테마파크업 또는 테마파
크시설의 제조·설치 또는
유지관리 관련업체에서 15
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
는 사람

③ 위원(제2항제1호에 따른 위
원은 제외한다)의 임기는 3년으
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문화체
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며, 사고
조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
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⑤ 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
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
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
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
면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
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
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

<신 설>

할 수 있다.

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, 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31조의4(사고기록대장의 작성

· 배포 등) ① 법 제33조의3 제

1항에 따른 사고기록대장 작성

· 배포와 제2항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법 제34조2에 따른 테마파크시설안전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.

② 법 제33조의3 제2항에 따른 대책은 매년 법 제33조의3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사고기록대장을 기초로 하여 마련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사고유형별, 지역별 발생현황

2. 사고원인 및 피해현황

3.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

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법

<u>제31조의3</u> (생략)	<u>제33조의3 제2항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</u> <u>제31조의5</u> (현행 제31조의3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진흥과	
연 락 처	(044) 203 - 2833